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68

발의연월일: 2020. 12. 9.

발 의 자:지성호·태영호·배현진

허은아 · 서일준 · 유의동

박대수・홍준표・이주환

윤창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형제, 자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 시 신원확인 및 보험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자가 가족관계의 내용을 잘못 진술하는 경우나 행정상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형제 또는 자매 관계가 포함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등록대장을 열람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4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족관계"를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호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호대상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등록대장을 열람하 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나이, 수학능력"을 "수학능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	제12조(등록대장) ①
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	
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	
준지, <u>가족관계</u> , 경력 등 필요	<u>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u>
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u>함한다)</u>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보호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
	된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의 교
	부를 신청할 수 있다.
<u><신 설></u>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
	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가족관
	계를 증명할 증명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u><신 설></u>	⑤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신
	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u><신 설></u>	⑥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신
	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 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 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 략)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 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u>나이, 수학</u> 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은 대통령령으로 성한다.
세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
례) ①
~
<u>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가</u> 조과게 드로 차서되기 시청시
<u>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u> 를 제출하기 전에 보호대상자
<u>글 세월에게 전에 포모대 8시</u> 가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등록대장을 열람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24조(교육지원) ①
<u>수학능럭</u>
②·③ (현행과 같음)